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0가합599919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영

담당변호사 김부권

피 고 1.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홍윤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정미진

변 론 종 결 2022. 5. 11.

판 결 선 고 2022. 6. 2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1. 주식회사 E과,

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2 기재 물품에 관하여 2019. 9. 23. 체결한 대물변제계약은 120,095,133원의 한도 내에서, 2019. 7.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9년 제791호 공정증서, 같은 2019년 제792호 공정증서, 같은 2019년 제794호 공정증서에 기해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은 211,838,803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하고,

나.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2019. 10. 8.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9년 제1050호 공정증서에 기해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은 168,971,29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331,933,9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168,971,2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E 사이 물품납품계약의 체결 및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8. 6. 8.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E으로부터 의뢰받은 G 납품용 자재를 구매대행하여 E에 납품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6%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는 E에 G 납품용 자재를 납품하였는데, E으로부터 2019. 1.부터 2019. 7.까지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원고는 2019. 10. 22. E에 미지급 물품대금 미화 3,175,628.91달러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E은 2019. 10. 31. 원고에 위 채무의 존재 및 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답신을 발송하였다.

4) 원고는 E을 상대로 미납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0. 6. 17. E은 원고에게 3,710,722,3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차전4762호)을 받아 확정되었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와 E 사이의 계약관계

1) 채무변제계약의 체결

가) 피고 B 주식회사(소송수계인을 포함하여 이하 ‘피고 B’라 고 한다)는 E과 별지 1 계약체결 내역 기재와 같이 각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각 납품계약에 따라 물품을 E에 납품하였으나, E은 피고 B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9. 7.경 피고 B에 물품대금의 변제기를 유예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 B는 2019. 7. 19. E과 사이에 E이 아래 표 각 ‘약정 지급액’란의 채무를 부담함을 인정하고 이를 2019. 10. 31.까지 순차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이하 ‘B-E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F가 작성한 아래 표 기재 각 공정증서(이하 ‘B-E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순번 | 증서번호        | 약정 지급액       |
|----|-------------|--------------|
| 1  | 2019년 제791호 | 934,094,102원 |
| 2  | 2019년 제792호 | 957,076,157원 |

|   |             |                |
|---|-------------|----------------|
| 3 | 2019년 제793호 | 1,345,814,048원 |
| 4 | 2019년 제794호 | 1,823,704,460원 |

다) E은 별지 1 표 중 ‘E 변제금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에 따른 채무 중 일부를 피고

B에 변제하였으나, 2019. 8. 31. 이후로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 2) 대물변제계약의 체결

가) 피고 B는 2019. 9. 23. E과 사이에 E이 피고 B에 별지 2 기재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 B는 이 사건 물품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E에 대한 미수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고 E은 위 충당된 금액만큼 그 채무를 면제받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E으로부터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보관하던 중 2020. 4. 24. 이 사건 물품 중 H사의 통신관련 제품을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179,904,867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매각하였고, 나머지 물품은 2020. 5. 1. 모두 폐기하였다.

## 다. 피고 C 주식회사와 E 사이 채무변제계약의 체결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8. 6. 1. E과 사이에, 피고 C가 E에 물품을 납품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 C는 E에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E으로부터 2019. 5.경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피고 C는 E에 미납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피고 C는 2019. 10. 8. E과 사이에 E이 피고 C에 대하여 6,0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함을 승인하고 이를 2019. 10. 15.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이하 ‘C-E 채무변제계약’이라 하고, ‘B-E 채무변제계약’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 2019년 제1050호 공정증서(이하 ‘C-E 공정증서’라 하고, ‘B-E 공정증서’와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4, 6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부분에 관한 판단

###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E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에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을 대물변제조로 이전한 것은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의 취소 및 가액반환을 청구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 B는 E의 다른 채권자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자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 B는 그 확정판결에 기한 가액배상금 전액을 변제공탁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8114 판결 참조).

나) 을가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의 채권자 주식회사 J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가합549983 판결,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 B는 2022. 2. 18. 위 판결이 원상회복의무로 가액배상을 명한 179,904,867원 전액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중 선행판결과 중첩되는 부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2022. 5.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물품의 가액이 300,000,000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선행판결과 중첩되는 부분을 제외한

120,095,133원(300,000,000원 - 179,904,867원)에 대한 청구만을 유지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으므로, 위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나. 본안에 관한 판단

한편,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의 가액이 300,000,000원을 초과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에 이 사건 물품의 단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단가는 E이 주장하는 단가이며, 물품 특정을 위하여 계약서에 기재되었을 뿐 피고 B가 그 가격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어 위 계약서에서 정한 단가를 이 사건 물품 가액의 산정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갑 제26호증에 기재된 물품의 종류와 이 사건 물품의 종류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물품의 가액을 산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의 실제 가액이 300,000,000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 사건 물품 중 선행판결과 중첩되지 않는 120,095,133원)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E은 피고들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이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나. 판단

1)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1497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6,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에 기한 공정증서는 E의 피고들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E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E이 피고들에게 그의 책임재산을 실질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피고들에게 미납 물품대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따라서 E이 그 변제를 위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E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는다.

② 피고들이 E로부터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받았더라도 이는 결국 집행권원을 취득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들은 여전히 일반채권자에 불과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과 달리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것은 아니다.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 각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았는데, 이때 원고들을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도 누구나 집행권원만 있다면 일반채권자로서 피고와 함께 배당받을 수 있었고, 실제로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K 배당절차에서 53,809,249원을 배당받았다.

| 피고 | 배당 법원         | 배당일           | 배당액          |
|----|---------------|---------------|--------------|
| B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K | 2020. 7. 29.  | 49,307,586원  |
| B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L | 2019. 12. 18. | 162,531,217원 |
| C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K | 2020. 7. 29.  | 168,971,297원 |

③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일 즈음 E의 다른 채권자들도 E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 행위가 피고들에게만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는 공정증서 작성 이전부터 E과 협의하여 E의 채권을 양수받는 등 피고 B의 우선변제를 위한 작업을 계속해왔으므로, E과 피고 B 사이 피고 B의 우선변제에 관한 통모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을 종국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과 이에 수반되는 채권 압류 등의 집행절차와는 구별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E과 피고 B가 상호 합의하에 E의 채권을 양도·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의 공정증서 작성 행위가 우선변제에 관한 통모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 B는 채권양수 등을 통하여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으려는 계획이 여의치 않게 되자 일반채권자로서 안분배당이라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 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순현, 판사 김민수, 판사 정중원

별지